

문서번호	아동청소년담당관-1715	시 민			
결재일자	2013. 1. 21.	주무관	아동복지팀장	아동청소년담당관	여성가족정책실장
공개여부	대시민공개				
방침번호					



2013년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지원 계획

2013. 1

여성가족정책실
(아동청소년담당관)

사전 검토항목

:::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'무 ■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검토항목	검 토 여 부 (■ 표시)
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	● 시 민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	● 이 해 당 사 자 : 유 ■ (이동공동생활기정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
	● 전 문 가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	● 음 브 즈 만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법 령 및 기 타 고 려 사 항	● 법 령 규 정 : 교통 <input type="checkbox"/> 환경 <input type="checkbox"/> 재해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■ (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
	● 기 타 사 항 : 고용효과 ■ 노동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 균형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 홍보 <input type="checkbox"/> 취약계층 <input type="checkbox"/> 성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디자인 <input type="checkbox"/> 갈등발생 가능성 <input type="checkbox"/> 유지관리 비용 <input type="checkbox"/> 무 <input type="checkbox"/>
타 자 원 의 활 용	● 중 앙 부 처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
	● 민 간 단 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
	● 기 업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
관 계 기 관 및 단 체 협 의	● 관 계 기 관 : 유 ■ (이동공동생활기정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
	● 민 간 단 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
	● 시 산 하 기 관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

목 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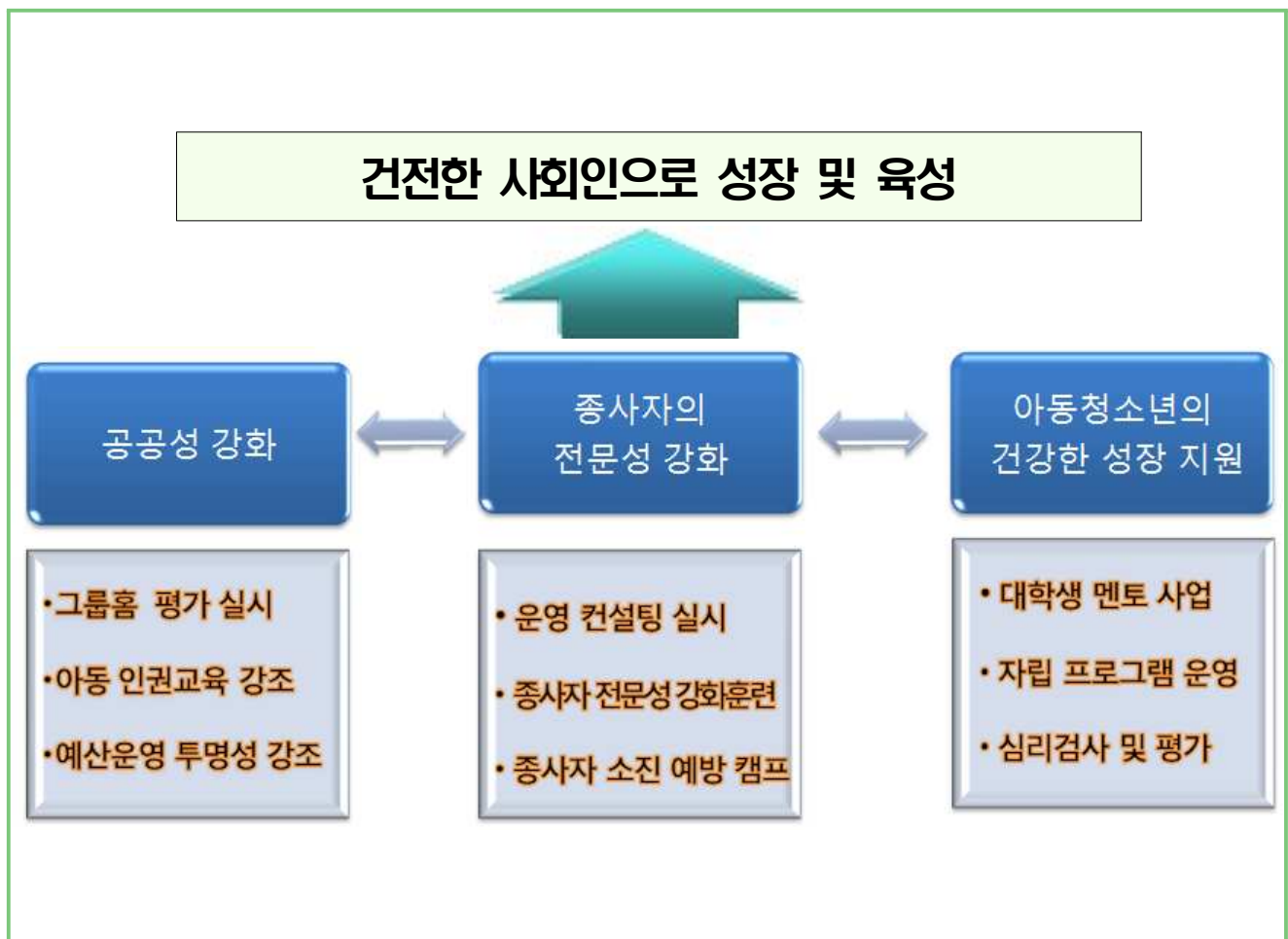
I	추진 방향	4
II	추진 개요	5
III	입·퇴소 및 시설 운영	6
IV	2013년 운영 지원 계획	7
V	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운영	10
VI	공동생활가정 기능 강화	11

붙임 : 공동생활가정 현황

2013년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지원 계획

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·청소년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

1 추진 방향



□ 2013년 주요 변경 사항

생활 아동 추가 지원	<p>◇ 아동양육시설과 동일하게 지원(동일 및 신설 지원내용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영양급식비(1,500원/일/인), 춘계부식비(6,000원/년/인) 김장비(6,500/년/인), 아동용돈(초 : 5,000원, 중 : 8,000원, 고 : 10,000원), 참고서 구입비(초 : 40,000원, 중 : 60,000원, 고 : 90,000원), 수학여행경비(초 1~3 : 30천원, 초4-6 : 70천원, 중 : 100천원, 고 1-2년 : 200천원, 고3 : 700천원), 캠프 및 수련비(초 70천원, 중 : 100천원, 고 : 200천원, 대 : 300천원), 교복구입비 : 300천원/인)
관리운영비	◇ 관리운영비 : 전년 대비 10천원 인상(24만원 지원)
임상심리치료	<p>◇ 아동심리 치료 및 연계 지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광아동상담 전문기관 연계 및 전담인력 확보
종사자 처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인건비 상향 : 전년대비 556천원 증/년/1인(19,073천원 지원) - 초과근무수당 : 전년대비 21천원 증/월/1인(121천원 지원)
시설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용면적 : 82.5m² 이상(종전 60m²이상) - 입지조건 : 50미터 주위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쾌적한 환경
종사자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배치기준 : 0~2세(2명당 1인), 3~6세(5명당 1인), 7세이상(7명당 1인) ※ 2015년까지 연차별 시행 - 종사자 가족 거주 제한

2 추진 개요

□ 추진근거

- 아동복지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(비용보조)
-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

□ 추진배경

- 대규모 집단시설 위주의보호에서 소규모 가정형태 보호강조
- 탈 시설화의 이념 및 정상화의 원리 바탕으로 자립능력 향상

아동공동생활가정 현황

(2012. 12월 현재)

구분	개소수	종사자 수	평균	아동수				학년별 아동수				
				계	평균	남	여	미취학	초	중	고	기타
계	61	122	2.3	295	307	153	154	440	82	92	55	37

※ 기능 : 안정적인 공간으로서의 기능, 방임, 학대, 비행으로부터의 보호기능

3 입·퇴소 및 시설 운영

그룹홈 운영

○ 남녀의 구분에 따른 분류

- 남녀분리형/남여혼합형(신규신고시설은 미취학 아동까지만 혼합 가능)

입소 및 퇴소

○ 보호필요아동의 공동생활가정(그룹홈)의 아동입소 결정은 아동복지법

제10조 규정에 의거 서울시아동복지센터에서 상담 후 결정

- 그룹홈에서 아동 보호 후 관할 지자체로 통보하는 방식 불가

○ 공동생활가정(그룹홈)의 유형에 따라 입소대상 아동 선정 및 입소

- 대상아동의 입·퇴소절차는 시설아동의 입·퇴소절차와 동일

인원 및 기간

○ 시설당 보호아동은 5인을 기준으로 하되 7인 이내로 함

- 입소아동은 5인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며, 시설평가결과 우수한 시설에 우선 입소토록 최상의 보호환경을 부여하도록 노력

○ 장기보호의 경우에는 시설보호와 동일하게 18세미만(출생일기준)까지 보호 가능하나,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1조(시설보호기간의 연장)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 가능

□ 종사자

- 배치기준 : 시설장 1인 및 보육사 1인 배치(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5)

연령별	보육사 배치 기준
0~2세	아동 2명당 1인
3~6세	아동 5명당 1인
7세이상	아동 7명당 1인

- 아동복지시설에서 각 시설의 고유업무외에 공동생활가정사업을 실시할 경우 시설장을 대신하여 생활복지사 1인이상 추가 배치

- 자격기준 : 아동복지법시행령 별표4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직종별 자격기준(시설장, 보육사) 준수

4 2013년 운영 지원 계획

기본방향 : 지역사회 수용 및 대안 가정형태로 운영

- 종사자의 전문 역량 강화
 - 그룹홈 운영 컨설팅 및 종사자 상담 및 교육 훈련 강화
-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시설 운영으로 투명성 제고
 - 시설 운영위원회 활성화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
-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아동 중심으로 운영
 - 아동 진로(코칭) 프로그램 및 임상 심리 치료 지원

□ 사업 개요

- 사업기간 : 2013년 1월 ~ 12월
- 사업량 : 61개소
- 지원내용 : 인건비, 관리운영비 등

□ 예산현황

○ 연도별 지원현황

(백만원)

구 분	2009년	2010년	2011년	2012년	2013년(예정)
지원시설수	50	53	56	60	61
예산액	1,892	1,914	2,215	2,939	3,036
증가율(%)	23.0%	1.1%	15.7%	32.6%	31.9%

□ 지원 순위 및 기준

○ 지원 대상

- 아동복지법 제50조 규정에 의해 신고한 공동생활가정 시설
 - ※ 법인 시설의 비영리단체, 개인 등의 신고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

○ 지원 순위

✦ 지원 대상 순위

- 1순위 : 사회복지법인,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비영리법인
- 2순위 :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
- 3순위 : 구청장이 우수하다고 추천한 개인운영시설
 - ※ 미지원 개인운영시설에서 그룹홈으로 전환시설은 순위에 우선하여 지원

- 예산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시설에 적정 인원을 배정하고, 보호아동이 소규모로 운영되지 않도록 함.
- 신규지원 대상시설 선정은 우리시 총 사업량 내에서 선정

○ 지원 기준

기존 지원시설				신규 지원 시설			
5인이상	4인	2~3인	1인	5인이상	4인	2~3인	1人以下
전액	전액	4개월째부터 2/1지원	3개월까지 지원	전액	전액	2/1	미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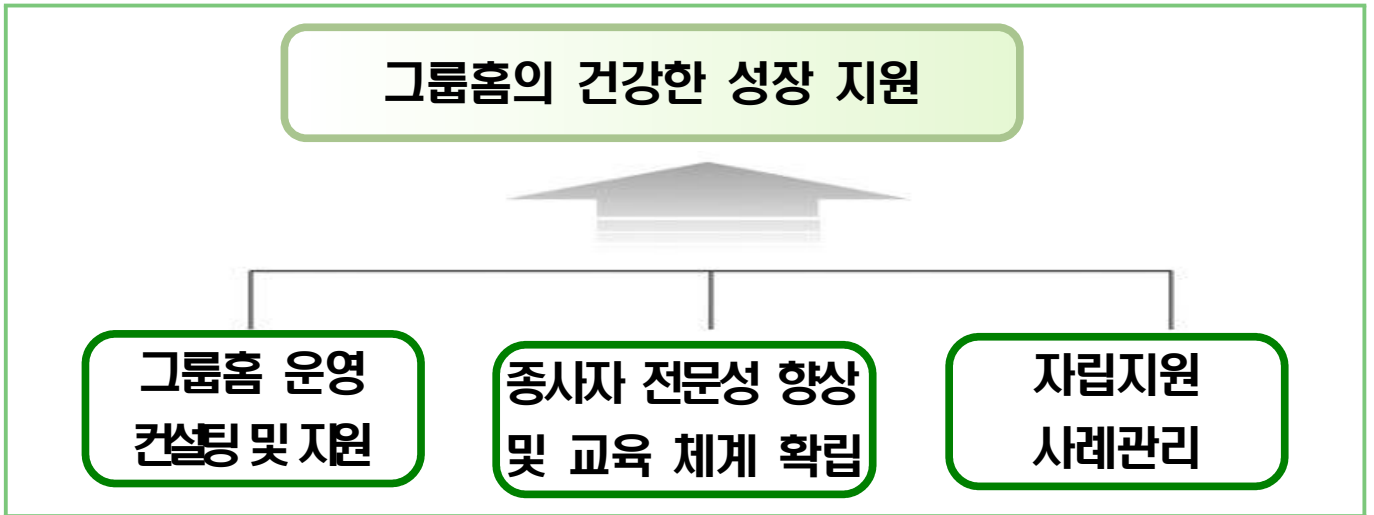
- 예산 운영의 효율성 집행을 5~7인 보호 시설의 지원을 원칙

□ 지원 내용 : 2013년부터 생활아동지원은 아동복지시설과 동일하게 지원

사업명	지원대상	사업별	지원 기준
아동공동 생활가정 지원	국고보조금 보조율 (40:60)	인건비	19,073천원/1인(556천원)
		운영비	240천원/1개소(10천원)
		초과근무수당	121천원/1인(21천원)
	사비보조금 (100%)	총사자처우수당	5년이상 : 290천원/인, 5년미만 : 240천원/인
생활아동 지 원	시비보조 금 (100%)	대학입학금	- 3,000천원/인
		자립정착금	- 5,000천원/인
		직업훈련비	- 600천원/분기/인
		명절위문비	- 1인당 10,000원(년4회) · 어린이날 1인당 10,000원 추가 지원
		영양급식비	- 아동1인당 1,500원/일/인
		춘계부식비	- 아동1인당 6,000원/년/인(5월)
		김장비	- 아동1인당 6,500원/년/인(11월)
		아동용돈	- 아동1인당/월 · 초 : 5,000원, 중 : 8,000원, 고 : 10,000원
		참고서구입비	- 1인당/년 · 초 : 40,000원, 중 : 60,000원, 고 : 90,000원
		수학여행경비	- 1인당/년 · 초(1~3년) : 30천원, 초(4~6년) : 70천원 · 중 : 100천원, 고(1~2년) : 200천원 · 고등학생(3년) : 700,000원
		캠프 및 수련비	- 1인당/년 · 초 : 70천원, 중 : 100천원, 고 : 200천원 · 대 : 300천원 ※수학여행경비와 캠프및수련비는 중복지원불가
교복구입비	- 중·고 : 300,000원/인 ※ 국고 지원비 등 기타 지원비가 있을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하고 지원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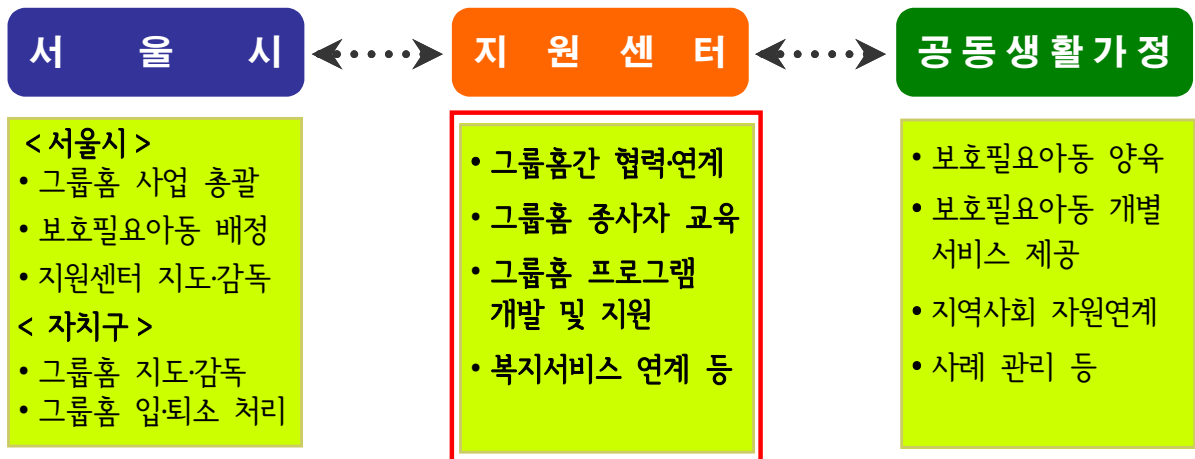
5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운영

□ 사업추진 방향



□ 사업추진체계

- 시: 총괄(지원), 지원센터: 그룹홈 연계 및 지원, 그룹홈: 양육 및 개별서비스 제공 등



□ 시설 현황

- 운영근거 :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조례(민간위탁 : 아동그룹홈협의회)
- 소재지 :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5-76
- 건물 : 231㎡(강의실, 임상심리검사실, 치료실 설치)
- 직원현황 : 5명

기능과 역할

- 개별 그룹홈과 아동 심리치료 등 지원 업무
 - 임상심리전문가 및 각계 전문가를 활용하여 보호필요아동 심리 치료 및 사례 관리 등
- 그룹홈 종사자를 위한 교육 지원 업무
 -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등 실시
- 효과적인 그룹홈 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및 연계체계 구축
 - 「그룹홈지원센터」를 중심으로 정보기반을 활용하여 그룹홈 간 연계체계를 구축 등
- 그룹홈 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
 - 그룹홈 사업에 대한 연구 및 자료 발간으로 아동보호의 전문성 축적
- 지역내 복지 서비스 정보 구축, 서비스자원 발굴 및 사례관리 등
 - 그룹홈 지원을 위한 민간자원 발굴, MOU체결 → 상시협력체계 구축

예산 : 200,000천원(민간위탁금)

6	공동생활가정 기능 강화
---	--------------

필요성

-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보호아동의 지적, 정서 욕구에 적합한 프로그램 부족
- 심리상담 영역뿐 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와 신체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조기에 발견 치료 필요

세부 사업 내용

- 그룹홈 보호 아동을 위한 심리 검사 치료 지원
 - 지원대상
 - 그룹홈 아동 중 정서, 행동장애 부적응 아동
 - 도벽, 기분장애, 게임중독, 학교 부적응 등 심리, 정서적 문제 아동
 - 방 법 : 자광아동상담소에서 상담 및 치료전문(담당 인력 2명)

- 내 용
 - 찾아가는 심리·정서 서비스
 - 종사자의 양육 상담 향상을 위한 전문성 강화 훈련
 - 집단 상담 서비스 등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제공

○ 아동학대 치유 전담 그룹홈 운영(기능 특화시설)

- 운영개소수 : 1개소(시범 운영)
- 기능 및 역할
 - 24시간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·치유 강화
 - 피해아동 교육·특기적성·문화체험 등 개별화 특화
- 설치 계획(설치)
 - 현재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중 1개소를 활용하여 지정·설치
- 지 원
 - 인건비 지원 : 3명 지원(기본 2명 외 지원인력 1명 추가 배치)
 - 기능보강 지원 : 피해아동 치유를 위한 심리검사·치료실, 상담실, 사무실, 등 기타 필요시설에 추가 설치비 지원.

붙 임 : 아동공동생활가정 현황 1부. 끝.